

의안번호	2207697
의 퇴 인	박수영 의원
회 답 일	2025. 2. 6.
추 계 번호	24A62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범위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확대함	의무 규정
2	안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손실 보상에 갈음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재량 규정
3	안 제73조의4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국유재산의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음	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초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 보수 등을 위한 사용허가를 중단한 경우 손실 보전 또는 이에 대응하는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도입하고,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료 수입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학교의 범위를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이전에 설립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학교시설의 증·개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둘째,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 보전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경우 손실 보전에 대응하는 기간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사용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국가 등이 부담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0.8%(체크카드 0.5%)가 발생하며 지방세의 경우 금융결제원에 귀속되는 수수료(건당 26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영구시설 축조 금지 제한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의 영구시설 증·개축 규모 및 방식, 국유재산 보수 등을 위한 사용허가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영구시설 축조 금지 제한을 받는 초등학교의 영구시설 증·개축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국유재산 보수 등을 위한 사용허가 일시 중단 대상 국유재산의 현황 및 연차별 보수공사 예상기간에

1) 1991년 3월 8일 제정, 1991년 6월 20일 시행

관한 계획 자료가 필요함

-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납부대행기관 수수료 지불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nabo.go.kr